법무뉴스

법원 '주식발행 전 투자자 동의 요구하는 약정은 무효'

–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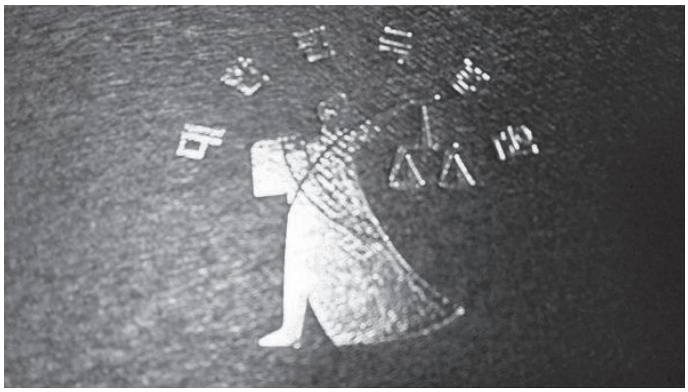

신주 인수 방식의 투자자에게 회사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주는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주주들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민사 16부(재판장 차문호)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40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컴퓨터시스템 제조 판매회사인 B사는 2016년쯤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B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그해 12월 신주 20만주를 발행했고 투자자인 A씨는 그 신주를 2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B사가 신주를 추가 발행할 경우 자신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투자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은 물론 20억원의 투자금 상당액을 별도로 물어내기로 하는 '위약벌' 약정을 체결했다.

B사는 2018년 8월에 18만주, 11월에 8만주를 발행하면서 A씨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투자금 20억원 및 위약벌 20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주발행과 같은 회사의 중요 정책결정을 투자자 동의 하에서만 하도록 한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다. 회사가 신주발행의 형태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투자 유인을 위해 투자자를 우대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약정까지도 허용되는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원고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 경영에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위반시에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금 두 배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의결권 등에 있어 평등대우를 한다는 상법상 원칙이다. 특정 주주가 투자자라는 이유로 '신주발행 사전동의권'까지 인정하게 되면 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하는 '투자자 우대약정' 중 무효가 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투자자에게 주주로서의 이익 외에 일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주주와 사후 투자자 사이에 주주로서 지위가 불평등했던 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조선일보)